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ume 13, Number 3, September, 2011: pp. 433~457
통상정보연구 제13권 3호 (2011년 9월 27일)

논문투고일자 : 2011. 8. 19
심사(수정)일 : 2011. 9. 15
게재확정일자 : 2011. 9. 17

환경조치의 WTO체제 수용에 관한 연구

Accommodation of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 Purposes on the WTO Rules

채대석(Dae-Seok Chae)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제 1저자)

김미정(Mie-Jung Kim)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교신저자)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무역과 환경과의 상호관계
Ⅲ. 다자무역체제 내에서의 무역과 환경
Ⅳ. WTO체제 내에서의 환경 관련 규정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회원국 간에 엄격한 다자간 규정의 적용을 보장함으로써, WTO체제에서의 각종 협정의 권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평가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무역의 확대와 더불어 세계는 지구온난화, 멸종위기종, 천연자원의 고갈 등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시작했고, 20세기말에 성립된 수많은 다자간 환경협정들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WTO체제가 자유무역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한 환경파괴와 관련하여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도전 및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어려운 쟁점이 있다. 첫째, 환경기준의 조화문제, 둘째,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따른 상품표준의 사용문제, 셋째, 환경기준의 무역의무 위반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용될 무역규칙(trade rule) 문제, 넷째, 환경관련 분쟁에 있어서 환경관련 협정에 관한 심사기준의 적용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관련 환경조처를 WTO체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무역을 통한 성장과 환경보존과 보호가 양립될 수 있는가 그리고 WTO 체제는 환경문제에 공헌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제어 : 환경과 무역, WTO체제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Ⅰ. 문제의 제기

세계 2차 대전 후 국제무역체제가 재구성될 때 경제통합의 환경적 결과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환경에 관한 간접적 언급이 GATT 1947의 예외 조항으로써 Article XX에 포함되어, 만약 각국이 사람,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을 위해서 또는 유한천연자원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상무역 규칙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수입원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국제무역의 위장된 제한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그 후 초창기의 GATT체제에서는 GATT 계약당사자의 일반 행위에서나 분쟁에서는 언급이 없었으나,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인간환경회의에서 이 문제가 의안으로 채택되었다. 그 결과 GATT 사무국은 환경 문제에 관한 분석을 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게 되고 GATT이사회는 환경조치와 무역에 관계된 실무 그룹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까지는 이 그룹의 소집요청이 없었을 만큼 환경에는 관심이 없었다.

당시에는 무역이 자연환경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경제적 분석도 없었으며 상품교역에 따른 공해에 대한 장애도 없었다. 이론적인 면에서는 생산 및 소비의 환경 비용을 내부화하는 환경정책을 실시하면 자유무역이 후생증가를 가져온다는 결론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무역 주장이 의존하는 기본 가정의 이탈의 결과가 무역자유화 과정의 정지 혹은 번복이 아니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강화에 대한 논리로 간주되었다.

GATT의 초기 40년간은 환경문제의 순위가 낮은 기간이었던 반면 1990년 초부터는 그 반대방향의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국내적으로는 환경문제가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었던 반면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소홀히 했던 관계로 국내보호조치의 치외법권지역 적용에 의한 환경관련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한 예로 1988년 미국은 국내 어업에 적용하는 돌고래 보호기준을 충족시키지 않고 어획한 해외다랑어에 대해 금수조치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쟁에서 패널은 금수조치가 제법과 생산방법에 따라 수입품을 차별한 내국민대우 규정에 위반 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패널의 판정이 GATT 이사회에 의해서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국제 환경계에서는 환경정책 결정과 다자간환경협정에서의 무역규정의 법적 지위를 포함한 환경 목적을 지원하는 무역조치사용에 하나의 위협(threat)으로 평가되었다. 나아가서 이러한 판정은 교역권으로서 외국이 국내환경정책에 개입하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문호의 개방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요컨대 합법적 환경 관심사항이 무역 관료에 의해 자유무역의 제단에서 희생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무역계에서는 정부가 치외법권적 환경목적을 위한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그

러한 행위는 잠재적으로 다자무역체제를 손상시킨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랑어 돌고래 판정에 따라 증가된 대중의 반무역적 정서는 그 후 GATT의 통상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환경에 대응하기위해 그간 수면상태였던 GATT의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그룹(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의 소집이 있었다. 이 그룹은 국제무역환경에서의 사태발전이 새로운 무역조치에 대한 자유재량권(carte blanche)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환경과 무역문제는 전통적인 약속과 GATT의 권한 내에 유지시켜야 한다는 임무를 갖고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특히 현존 다자 환경협정과 GATT 원칙과 규정에 포함된 무역규정, 무역효과를 갖게 될 국내 환경규정의 다자간 투명성, 환경보호에 목적을 둔 새로운 포장 및 라벨 요건의 무역효과를 조사하는 것으로 그 임무가 주어졌다.

1995년 WTO의 창설로 무역관련 환경문제는 다자무역체제에 확실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WTO는 설립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받아들이고 있다. 나아가서 무역과 환경의 상호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가 준비되어 있고 무역 및 환경위원회도 구체화 되었다.

무역을 통한 세계경제통합으로 주요 환경적 반향을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또한 개별국가의 규제력을 감소시키거나 감소된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생태체계는 국경 테두리로 시작되거나 끝나는 것은 아니며 공해는 바람과 물을 통해서만 이동하는 것도 아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지구적 환경문제에 관한 경우에는 상업적 관계가 더욱 중요하고 따라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WTO체제가 무역관련 환경문제를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논문에서는 WTO체제가 무역관련 환경문제를 어느 정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무역을 통한 성장과 환경보존과 보호가 양립될 수 있는가? 그리고 WTO체제는 지구적 환경 문제에 공헌하고 있는가? 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무역과 환경과의 상호관계

1. 무역의 환경적 영향의 분류

WTO체제의 환경문제 수용을 구체화하기 전에 먼저 환경에 있어서 무역효과를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함으로써 무역의 환경적 영향을 구체화하려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중엽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1991년의 다랑어 돌고래 논쟁 이후의 내용이 유효하다. 왜냐하면 최근 논의는 주로 상이한 환경기준을 가진 국가 간 무역의 환경적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논문주제와 연관성이 높다. 그리고 환경 기준의 차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으로 관찰할 수 있고 소득격차에 의한 환경기준의 차이로 관찰될 수 있다. Grossmin과 Krueger의 연구 이후 무역의 환경적 영향을 세 가지 상호작용 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 규모효과(scale effect), 기술효과(technique effect)가 그것이다.[1)]

먼저 구성효과는 무역 유발 특화로 발생되는 것이다. 무역으로 인해 특히 비교우위 분야만 생산하고 여타 분야는 수입함으로써 일부부문의 특화에 의해 일어나는 효과이다. 그 결과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해 이익이 발생한다. 이때 만약 확대되는 수출부문이 축소되는 수입경쟁 부문보다 공해발생이 적으면 국내환경에 있어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게 될 것이지만 반대관계가 유지되면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다. 순 효과는 확대되는 수출부문이 일반적으로 축소되는 수입부문보다 오염을 적게 시킨다면 긍정적으로 되고 반대이면 부정적이 된다.

국제무역의 특성상 모든 나라가 보다 청정한 산업에 특화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역은 공해가 적은 산업에 비교우위를 갖는 나라에서 비교적 공해산업에 비교우위를 갖는 나라로 공해문제를 재분배시킨다.

둘째, 일정의 공해 계수(coefficients)와 생산구성을 조건으로 했을 때 확대되는 경제활동은 공해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일정 조건에서 경제 성장은 환경에 유해한 것이다.

셋째, 기술효과이다. 규모효과의 긍정적인 면이라면 청정환경에 대한 수요를 추구하는 소득성장이다.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과 공해 방지세와 같은 것이 소득증가에 이어 수반된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2)] 그러나 정책과정이 공해유발산업에 의해 장악되지 않아야 하며 반민주적 정부에 의해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

사실 이 세 부분 효과의 순 효과가 결국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어떤 원인에 대해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확인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개별적 분류는 유용하다. 선후진국 간 상이한 공해집약성을 갖는 상품을 대상으로 통합모델로 하여 제시된 연구는 공해 문제가 국가적 성격이고 국제적 반향은 없는 것으로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두 지역 정부는 높아지는 소득에 따라 높은 조세를 부과하여 공해세로 공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3)].

무역이 전개되면 일련의 조정이 일어나고 이 결과 공해에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조

1) G.M. Grossmin and A.B. Kruher(1991), *Environmental Impacts of a NAFTA*, NBER Working Paper No. 3914, II.
2) 기술효과를 소득효과(income effect)로 하여 구성규모(size), 소득효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3) B. Copelaud and Taylor(1994). "North-South Trade and the Environ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 pp.755-787.

정은 산업구성의 조정이다. 이에 의해 북반구에서는 공해 산업이 축소되고 남반구에서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소득격차에 의해 북반구는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효과는 북반구의 공해는 완화시키고 남반구에서는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서 경제활동의 전반적 확대로 인해 발생되는 규모효과는 어느 곳에서나 환경에 좋지 않는 효과를 갖는다. 동시에 관련 소득증가는 오염감소 비용을 지불할 의지를 증가시킨다. 국가는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행위 하므로 공해세는 증가 될 것이다. 결국 세금회피 목적으로 추가 감소 조치를 채택하게 된다. 생산단위당 공해는 이러한 기술효과로 감소될 것이다.

만약에 환경수준에 대한 수요가 소득 증가율 이상으로 증가하면 기술효과는 규모효과를 중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기술효과는 남반부에서의 규모효과와 부정적 구성효과 양자를 중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역자유화는 선진국에서는 국내환경문제를 완화시키지만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는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결과는 선후진국 간 균형성장은 세계 전체적으로 공해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양 지역에서 환경 기준이 나란히 증가할 것이고 이에 의해 산업구성은 불변이 되기 때문이다. 북반구가 더 빨리 성장하면 배출기준은 한층 차이가 나고 남반부의 공해산업 확대와 북반구의 축소로 나타난다.

그 결과 전반적 공해는 증가하게 된다. 이는 생산 단위당 평균 공해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반부가 더 빨리 성장하면 반대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남반부의 배출기준은 북반부에 수렴되고 전반적 공해는 감소된다.

물론 기술효과가 규모효과를 중립화시킨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현실적 전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의 결과는 각국 간 소득 수렴의 계기가 되는 한 무역자유화는 세계 공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실제 세계는 개방경제가 폐쇄경제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무역장벽이 개발도상국에서 일반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보다 자유로운 국제통상체제는 지구적 환경에 유익하다고 볼 수 있다.[4)]

2. 국경 초월적 공해와 무역

CO_2 배출과 같은 공해 문제는 결코 국경의 범위를 한계로 하지 않는다. 지구온난화가 그 한 예이다. 이러한 경우는 국내적으로 거래 가능한 배출 허용 조건으로 적용되는 자체부과

4) 농산물, 섬유 및 의류의 경우는 개발도상국의 장벽이 오히려 낮은 예외적 부문에 속한다.

국가 쿼터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자유화는 배출기준 차이에 따라 구성효과가 발생하고 북반부는 청정산업이 확대되고 남반부는 공해산업이 확대된다. 공해 쿼타가 거래될 수 있다면 공해 허용의 시장가격이 쿼타 이용의 크기에 따라 변할 것이다. 따라서 북반부에 가격인하가 남반부에는 가격상승이 있게 된다. 가격 변화에 따른 2차 조정은 남반부는 증가되는 공해산업 구성을 수용하기 위하여 배출허가 쿼타량을 증가시키고, 북반부는 오히려 배출허가의 일부를 축소하게 된다. 이때 축소와 확대가 100%상쇄 되지 않는 한 무역자유화 이후에 전보다 세계전체로써는 더 많은 배출이 이루어진다.

Chichilnisky는 자연자원에 관한 재산권이 선진국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에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5] 특히 자연자원은 남반부에서는 주로 공동재산제도로써 관리되고 있으며 자유 접근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은 과잉 이용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공유지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 무역에 의해서 악화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분명치 않은 재산권으로 인해서 자연 자원 추출에 표면적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제무역에서 자원집약재에 특화를 하게 되고 이는 자연자원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재산권이 명확하게 되는 경우보다 상당하게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무역자체에서 연유 한다기보다는 빈약한 재산권 제도에 원인이 있고 실제 세계시장으로부터 수요가 국내 수요에 추가되는 것보다 악화되는 자연자원 과잉이용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상의 논리는 비교우위가 환경기준과 자원관리의 차이로 결정된다는 중요한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일인당 소득의 차이와 관계가 있게 되고 이에 의해 부국은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과 더 정교한 자원관리 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는 선진국의 환경파괴를 감소시키고 개발도상국의 환경파괴는 악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전 세계적 환경 문제에 관한 파괴의 확대로 나타난다. 이 논리에 따른 교훈은 자유무역은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자협정의 수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우위가 단순히 환경기준의 차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국에서도 오염감소 비용은 생산원가의 극미한 비율 혹은 산업평균 1% 정도 이거나 최대 공해 배출산업의 경우에도 대략 5%정도로 평가되고 있다.[6]

비교우위에 중요한 것은 개별 국가의 감소비용이 아니라 규제 엄격성의 절대적 차이로 나

5) Chichilnisky(1994), "North-South Trade and the Global Environ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2, pp.855-874.
6) WTO(1999). *Trade and Environment.*

타난다. 만약 개발도상국의 규제가 반 정도의 엄격성을 가지면 비용의 불리함은 생산비의 평균 0.5%정도가 되고 최대공해산업에는 2.5%로 증가하게 된다. 비교우위 결정의 다른 요소 영향이 공해정책비용 차이를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요소 모델의 고전적 비교우위에 따르면 다른 조건 일정의 가정에서 세계평균보다 자본/노동 비율이 높은 국가는 자본집약재에 비교우위를 가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자본 풍부국이고 자본집약재에 비교우위를 갖고 개발도상국은 노동집약재에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공해 산업은 최대공해방지비용이 소요되고 대개 펌프와 제지, 비철금속, 화공 및 농업약품, 철강, 원유정제 부문과 같은 산업이 될 것이다. 대개 이들 산업은 가장 자본집약부문이고 표준무역 이론에 따르면 자본 풍부국에 모여 있는 것이 자연스런 경향이다. 선진국에서 이러한 산업에서 높은 공해감소 비용 때문에 비교우위를 완전히 전복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스럽다. 높은 공해방지 비용으로 고전적 비교우위 결과가 전복되지 않으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은 자본집약재인 공해산업에 특화하는 선진국의 공해는 증가하고 노동집약재인 비공해 산업에 특화하는 개발도상국의 공해는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7] 물론 세계 전체의 공해는 감소된다. 그 이유는 공해생산의 대부분이 엄격한 환경규제 하에 있는 선진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상의 이론적 검토에서 보면 무역과 환경 간에는 단순한 일대일의 대응관계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채택된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확실한 결과는 고유하게 청정산업에 비교우위를 갖는 나라에서의 국내 공해문제는 완화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는 국내 공해문제를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확실하다. 한편, 무역 자유화로 인해 지구적 환경문제는 환경기준 차이가 비교우위의 고전적 요소를 압도한다면 악화될 것이고 만약 고전적 비교우위 요소가 환경 기준의 차이를 압도하면 개선될 수 있다. 이 두 번째 경우가 지배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공해감소로 이어지는 생산비의 점유율이 크지 않다는 것 때문이다. 무역과 환경에 관한 문제는 유치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7) W. Antweiler, B. Copeland, and S. Taylor(1998), *Is Free Trade Good for the Environment?*,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Ⅲ. 다자무역체제 내에서의 무역과 환경

1. GATT체제에서의 무역과 환경

1) 논의의 태동 및 발전과정

무역과 환경문제의 논의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무역에 있어서 환경정책의 영향과 환경에 있어서 무역의 영향으로 구성되는 무역과 환경보호간의 연계는 1970년 초에 인식되어 졌다. 1970년 초 사회발전과 환경에 관한 경제성장의 영향에 관한 국제관심이 증가된 것을 계기로 1972년 인간환경에 관한 스톡홀름회의(Stockholm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이 후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다.

1971년 사무총장이 보고서를 체약국에 제출하면서 국제 무역에 있어서 환경정책의 잠재적 합의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이 결과로 인해 태동된 토의가 일어났고 많은 체약국이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한 GATT내의 기구 설립을 제시했다. 따라서 1971년 11월 GATT 이사회에서 EMIT Group(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 and International Trade)설립이 동의되었다. 이 그룹은 체약국의 요청에 의해서만 소집되게 되었으나 1991년까지 행동을 위한 요청이 제기되지 않았다. 1971년에서 1991년 기간 동안 환경정책이 무역에 점차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기간 중 무역 증가로 인해서 무역의 환경 영향이 명백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Tokyo 라운드(1973~1979)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의 형태로 환경조치가 무역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도에 관한 문제가 취급되었다. 그 결과 표준협약(Standard Code)으로 알려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협정(Tokyo Round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조인되었다. 여기에는 기술규정 및 표준의 준비, 채택, 적용에 있어서 무차별과 투명성을 요구하였다.

1982년에는 환경위험 면에서 혹은 보건과 안전의 이유로 선진국에서 금지된 상품이 개발도상국으로 계속 수출되는 사실에 대해 관심을 표현했다. 제한적인 정보로 인해서 개발도상국은 수입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결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1982년 각료회의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혹은 환경에 유해하다는 면에서 국내 금지된 상품의 수출을 통제 하에 둘 필요가 있는 조치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 결과로 1989년 국내금지 상품 및 위험물질의 수출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the Export of Domestically Prohibited Goods and Other Hazardoun Substances)의 설립이 있었다.

1986~1993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기간에 무역관련 환경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표준협약의

수정이 있었으며 GATS, SPS협정, SCM, TRIPs에서 환경문제가 강조되었다.

그 중에서도 1987년 세계 환경과 발전에 관한 위원회가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 일명 위원장이었던 노르웨이 Gro Harlem Brundtlan의 이름에서 유래하여 Brundtlan Report)라는 보고서에 처음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가 창조되었다. 이 보고서는 빈곤이 환경파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확인하고 부분적으로 무역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 향상이 빈곤의 공해로 알려진 실체를 해결하는 필요자원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주장했다.

1991년에는 EFTA(European Fred Trade Association)가 EMIT그룹의 행동이 필요함을 당시 GATT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여기서 무역관련 환경문제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여 다음해인 1992년의 UNCED에 일정 공헌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GATT의 사태발전과 환경포럼의 발전 등은 EMIT그룹의 행동개시에 긍정적 반응을 얻게 되었다. 이 그룹은 GATT 운영의 환경보호정책의 가능한 효과를 검토하는 위임에 따라 환경조치의 효과에 관한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 졌다.[8]

EMIT 그룹의 행동에 이어 1992년에는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로 알려진 UNCED는 빈곤 퇴치와 환경파괴 방지에 있어서 국제무역의 역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회의에 채택된 행동프로그램인 Agenda 21은 국제무역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촉진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2) WTO체제하에서의 무역환경

우루과이 라운드가 종료될 때 무역 관련 환경문제는 다시 한 번 관심의 대상이 되어 무역과 환경 분야에서의 WTO의 역할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WTO 설립 마라케쉬협정 전문에 설립협정 당사자들은 상이한 발전 단계에 있어서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이를 위한 수단의 강화를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자원의 최적이용을 감안하면서라고 하여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9]

---

8) 여기에는 international trad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s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the trade provisons contained in MEAs(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such as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ead boundary Movements of Har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the transparency of 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with an impact on trade)에 관한 상태표시제도(eco-labelling schemes)와 같은 환경조치의 효과를 말한다.

9) In the Preamble to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 while allowing for the optional use of the world's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seeking both to protect and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to enhance the means for doing so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ir respective needs and concerns a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1994년 4월에 CTE(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의 설립을 요구하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 on Trade and Environment)이 채택되어 CTE에 환경에 관한 광범위한 위임이 이루어 졌다.[10] CTE는 1995년 초에 처음으로 개최되어 10가지 항목들을 검토하여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01년 Doha 각료회의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관련된 문제에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고 이 목적을 위해 설치된 무역환경 특별회의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Special Session)에서 수행되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제수준에서 많은 발전의 결과 GATT/WTO에서도 환경 문제는 주요관심사가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무역과 환경간의 불일치성을 조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환경이익단체들로부터 압력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환경적 관심은 무역의 희생을 강조할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특히 새로운 녹색조건부가 시장접근기회에 부가될 것을 걱정했다.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WTO내에서의 무역과 환경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패러메터(parameters)가 지침이 되었다.

첫째, WTO는 환경보호기관이 아니다. Marrakesh 협정전문(preamble)에서 WTO회원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 과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각료결정에서도 CTE과업의 목적은 국제무역과 환경정책이 상호지원적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WTO회원국들은 WTO가 환경보호기관이 아니며 그렇게 되기 위한 열망을 갖는 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무역과 환경 분야에서의 WTO기능은 무역정책에 한 한 것이며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환경정책의 무역관련 면에 제한되어있다. 무역과 환경관계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회원국들은 WTO자체가 환경문제의 해답이라는 가정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과 환경정책은 서로 보완될 수 있다고 믿는다.[11]

이 전문 내용은 WTO협정의 무속협정의 해석에 영향을 주어 환경보호가 WTO체제의 적극적 역할로 해석되게 된다. 박덕영(2004), WTO무역과 환경규범의 해석동향에 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0) CTE의 실무프로그램은 다음 10가지로 이루어졌다.
Item1, MEAs and WTO rules
Item2, Environmental policies
Item3. Taxes, technical regulations, labelling
Item4, Transparency
Item5, Dispute settlement and MEAs
Item6, Market access
Item7, Domestically prohibited goods(DDGs)
Item8, Intellectual Property(TRIPs)
Item9, Services
Item10, Arrangements with NGOs

11) WTO(2005), *Trade and Environment at the WTO*, pp. 6-7.

둘째, GATT/WTO 규정이 이미 회원국이 국내 환경보호정책을 채택할 만큼 상당범위의 규정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GATT에서는 무차별이라는 한 요건만 전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이 포함된 무차별 원칙 하에서 국가 환경정책의 채택은 자유롭다고 믿고 있다. 무차별 원칙이 지켜지면 시장에 예측 가능한 접근으로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소비자의 선택이 보증될 수 있다.

셋째,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장접근확대이다.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사정과 경제성장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지원이 WTO에서 폭넓게 인정 및 수락되고 있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보면 빈곤이 제일의 정책집착이고 환경보호에 가장 중요한 방해이므로 이들의 수출품에 대한 세계시장의 개방이 필수적이다. WTO회원국들은 재정적 및 기술이전과 더불어 개발도상국 수출품에 대한 무역 자유화가 그들 개발도상국의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과업에 필요한 자원을 생성시키는데 주는 필요한 것임을 인정한다. 많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은 외환수입을 위해 주로 자연자원 수출에 의존하므로 무역자유화는 그들 자원의 배분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 이용을 가져온다고 예상된다. 나아가서 제조품 수출기회를 확대시킨다고 예상된다.

넷째, 무역과 환경협력은 확대되어야 한다. WTO회원국은 국내에서의 무역 및 환경부서간의 향상적인 협력이 국제 수준의 양자 간 정책 상충을 제거하는데 공헌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관계부족이 무역과 환경포럼에서 합의가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MEAs의 협상을 통한 다자간 협력이 지역적 및 세계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접근방법임을 알고 있다. MEAs는 환경문제의 일방적 조치에 안전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일방적 해결책은 차별적이고 환경 기준의 치외법권적 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을 수반한다. UNCED는 명백히 지구적 환경문제에 합의적 및 협력적 다자간 환경 해법을 지지한다. 그러한 협력적 해법은 임의적 차별과 위장된 보호주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국제사회의 공동관심과 세계자원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 것이다.

Ⅳ. WTO체제 내에서의 환경관련규정

이 장에서는 GATT 1994와 WTO협정상에서 환경에 직접관련 있는 규정을 분석함으로써 WTO체제 내에서 환경문제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용하는가를 밝힘으로써 앞으로 다자간 무역시스템의 환경 내에서 환경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

고자 한다.

1. GATT 1994와 환경 관련 규정

무역과 환경관련 문제에서 GATT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과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 제11조 수량제한조치금지 원칙과 제20조 일반예외규정이다.[12] 제3조와 11조는 동종상품(like product)[13]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으로써 환경문제와 관련되는 이유는 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의 조치가 있을 경우 주로 상기 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과 무역관련 분쟁의 경우에 관련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제 11조의 경우는 양적제한조치를 보다 투명하고 무역왜곡이 적은 수단인 관세로 전환시키는 것을 촉진할 목적으로 양적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환경보호 목적으로 특정 상품 즉 환경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양적 제한 금지를 위반하게 되어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GATT 1947의 제20조에는 GATT 규칙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많은 특정한 예외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b)와 (g)가 환경적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이 된다. (b)의 내용은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이고 (g)의 내용은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f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로 (b)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치와 (g)국내생산 혹은 소비의 제한과 함께 그 조치가 효과적이면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련된 조치는 예외로써 GATT의 의무위반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물론 여기서 환경보호를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보호조치는(b) 및 (g)예외 조건하에서 채택 및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20조 모두(chapeau)에서는 그러한 조치의 전제로써 동일조건인 경우에 국가 간 임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의 수단으로 구성해서는 안 되며, 국제무역의 위장된 제한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GATT 불일치 조치라도 임의 혹은 부당한 차별이어서는 안 되며, 위장된 제한 조

12) 이것은 사실 GATT의 핵심원칙으로 Article Ⅰ: The Most Favoured Nation과 ArticleⅢ : The National Treatment를 함께 일컬어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으로 부른다.

13) 동종 상품은 다음 4가지 기준에 의해 사안에 따라 결정된다.
① The properties, nature and quality of the product
② Tariff classification
③ Consumer's tastes and habits
④ Product end uses

치여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 조치는 분쟁 시에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첫째, GATT불일치 조치국인 피소국이 해당조치가 (b)와 (g)의 예외의 하나에 속함을 입증해야 하며 둘째, 모두 전문 즉 임의 혹은 부당한 차별과 위장된 제한이 아니라는 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US-Gasoline 사건의 패널과 상소기구의 접근이었다.[14]

미국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서 1990개정에 따라 EPA(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미국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가솔린 성분과 배출결과에 가솔린규정을 적용했다. 가솔린 규정은 특히 청정가솔린인 개질휘발유(reformulated gasoline)만이 가장 공해가 심한 지역에 판매될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 판매된 것 즉 재래가솔린(conventional gasoline)보다 조잡하지 않은 것만 판매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가솔린 규정은 모든 미국 정유업자, 혼합업자, 수입업자에게 적용했다. 국내 정유업자는 개별정유기준선을 설정할 때까지 1990년에 적어도 6개월간 운영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이에 의해 1990년 정유업자에 의해 생산된 가솔린 품질을 대표한다고 보았다.

EPA는 또한 법정기준선을 설정하여 1990년대 평균 품질을 반영시키려 했다. 이것은 1990에 적어도 6개월의 운영을 하지 않은 정유업자와 수입업자 그리고 혼합업자에게 적용되었고, 기준선 일치는 연평균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Venezuela와 Brazil이 미국 가솔린 규정은 특히 GATT 제 3조에 불일치하고 제 20조에 포함된 예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미국은 일치하여 제 20조의 (b),(g),(d)[15]에 포함된 예외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패널의 제 3조에 불일치하고 (b)(d)(g)의 예외로 볼 수 없다고 했다. (g)의 불인정 패널 판정에 대한 상소에서 상소기구는 기준선 설정규정은 (g)의 조건에 속하지만 다만 제 20조의 모두(chapeau)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정했다.

제 20조의 운용에 있어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첫 단계는 조치를 통한 환경정책이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거나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해 고안된 정책 범주에 속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필수성 기준과 같은 (b)와 (g)의 특정요건이 충족되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1) 필수성 기준(b)

특정요건은 필수성 기준으로 보통 불리어지는 이행요건으로 해당 조치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이어야만 한다. 필수는 GATT 협정에 일치하는 다른

14) WTO Case Nos 2 and 4. Ruling adopted 20 May, 1996.

15) (d)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on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GATT)

조치 혹은 협정에 불일치가 적은 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필수적이라고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패널의 판정이다.[16]

무역제한이 적은 조치는 균형기준으로 보완되는데 이것은 규제이행에 대한 환경조치의 공헌, 규제에 의해 보호되는 공동이익 혹은 가치의 중요성, 수출입에 수반되는 조치의 영향과 같은 일련의 요소들의 경중비교와 균형과정을 거쳐 조치가 필수적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환경조치가 필수성 기준을 통과한 것은 EC-Asbestos 사건이다.[17] 또한 상소기구는 추구된 공동이익 혹은 가치보다 불가결하거나 중요할수록 목적달성을 위해 고안된 조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더욱 쉽다고 언급하였다.

2) (g)요건

US-Gasoline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조치가 자연자원보존과 관련하여 만약 그 조치가 실질적 관계를 나타내고 부수적 혹은 우연적으로 목적한 것이 아니면 적격하다고 설명하고 있다.[18]

추가요건에 대해서는 국내생산과 소비에 있어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유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관련조치는 수입상품 뿐만 아니라 국내 상품에도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제 20조의 모두(chapeau)의 적용

일단 제 20조의 (b) 혹은 (g)의 하나에 의해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패널 혹은 상소기구는 도입절(introductory clause)인 모두(chapeau)의 적용으로 전환된다. 모두는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으로써 동일조건이 있는 국가 간에 조치가 자의적 혹은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US-Gasoline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조치나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큰 문제가 없으나 조치가 적용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 20조에 따르면 조치가 차별적으로 될 수 있으나 자의적 혹은 부당한 방법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부당한 방법으로 적용되었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확인되어야 한다. 첫

16) 1966 Tobacco Act하에서 Thailand가 궐련 및 기타 담배조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해 미국이 제소한 사건의 패널결정이다. 이를 흔히 최소무역제한요건(least-trade restrictive requirement) 이라하고 그 후 무역효과가 적은 접근방법(less-trade restrictive approach)으로 발전된다.

17) WTO. 2001.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on 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AB-2000-11. WTO/DS/135/AB/R/. March 12, 2001.

18) WTO(2005), *전게서*, p.52.

째 요건은 협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요건은 조치가 유연적이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치가 자의적 방법으로 적용되었느냐를 결정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경직성과 비유연성, 자의적 차별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결국 자의적 혹은 부당한 차별의 수단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협상노력과 2가지 기준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4) 위장된 무역제한

이 결정에 있어서는 패널과 상소기구가 점진적으로 도입한 세 가지 기준에 따른다.
첫째, 공개성기준(publicity test), 이것은 조치가 공개적으로 공표되었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조치의 적용이 결국 자의적 혹은 부당한 처벌에 해당되느냐의 고려이다.
셋째, 조치의 계획, 구조, 묵시적구조의 검토와 같은 고려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19]

2. WTO체제 환경규정

1) GATS의 환경규정

GATS에서는 GATT 제 20조와 유사한 예외조항을 제 14조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환경적 관심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GATS 제 14조(b)는 GATT 제 20조(b)와 동일하게 인간 혹은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면 GATS 불일치 정책조치 유지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모두(chapeau) 내용이 GATT 제 20조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거래대상이 서비스일 뿐 GATT와 차이가 없다고 봐야한다. GATT(g)의 유한천연자원의 보호는 GATS는 서비스무역이기 때문에 제외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2) TBT협정과 환경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협정은 상품이 기술규정과 표준으로 알려져 있는 의무 혹은 자율에 의해 상품규격과 규격에 일치함을 평가하는 절차 즉 일치평가절차가 무역에 불필요한 방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협정이다.

협정의 전문에서 각국의 적절한 수준에서 규격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인정하고, 제2.2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환경보호가 각국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이 됨을 인정하고 있다.[20]

---

19) WTO(2005), *상게서*, p.54.
20) TBT Agreement. Article2.2, -- Such legitimate objectives are, inter alia; national security requirements; the prevention of

이 조항에서는 GATT와 달리 환경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어 있다. 또한 상품규격과 일치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적용에서 무차별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서 규격과 절차는 국제표준과 조화하도록 하고 있다. 규격과 평가절차를 WTO사무국에 통지 및 문의처 설치를 통하여 규격과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 등이 협정의 핵심 내용으로 되어있어 환경조치는 이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3) SPS협정과 환경

SPS협정은 TBT협정과 유사하지만 보다 좁은 범위의 조치를 대상으로 한다. 각국은 첨가물, 독극물, 오염물질로부터 식품, 음료, 사료의 안전을 보장하고 병충해의 파급으로부터 국가 보호를 위해 취해진 위생 및 검역조치가 대상범위에 속한다. 이러한 SPS조치를 채택하는 회원국의 권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위험평가에 근거하여야 하며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만 적용해야 하며 유사조건이 실현되고 있으면 자의적 혹은 부당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협정 제 5.7에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해도 만약 SPS조치가 잠정적이거나 보다 객관적 위험평가가 수행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TBT협정과 SPS협정은 서로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4) TRIPs협정

지적재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TRIPs 협정은 Section5 특허에서 환경에 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Section5의 제 27(2-3)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거나 심각한 환경훼손회피(avoid serious prejudice to the environment)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영토내에서 특허취득 가능고안(patent ability inventions)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은 미생물체(microorganisms) 이외에는 특허취득가능 실물과 동물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동식물의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제법(biological process) 또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에 의해서든 효과적인 특별한(sui-generis)제도로써든 아니면 혼합에 의해서든 식물변종(plant varieties)은 보호해야 한다.

이들 규정들은 지적재산보호에 관련된 환경적 관심을 강조하기 위해 설계된 조항이다. 협정은 또한 각국이 환경보호를 위해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환경피해를 줄 수 있

deceptive practices,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the environment.

는 발명의 특허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윤리적 관심에서 시도된 식물과 동물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 하에서 특허 혹은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상이한 식물변종의 보호는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5) SCM협정과 환경

SCM협정은 비농산물에 적용되는 보조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협정 하에서 조치불가능으로 분류된 일정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었다. 조치불가능 보조금에 관한 제 8조 하에서 환경에 관한 직접 언급이었고, 특히 새로운 환경요건에 현존시설의 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금은 여기에 속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1999년말로서 효력이 정지되고 보조금 협정상의 환경 수용은 소멸되었다. 다만 긍정적 환경 외부성을 획득하도록 허용했다는 정신은 남아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6) 농업협정

농업협정은 농산물 무역의 개혁을 추구하고 시장지향적 정책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전문에서 협정은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농업을 개혁하기 위한 회원국의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다.[21]

협정 하에서 녹색상자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무역에 극소 영향을 갖는 국내보조조치는 감소대상 보조금 약속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정조건하에서 환경프로그램 지출이 포함된다.[22] 이러한 국내보조금 감축대상에서 환경프로그램 지출을 제외한 것은 긍정적 환경상의 외부성을 획득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7) 각료회의 결정사항과 환경

1994년 환경문제를 강조한 두 개의 각료회의 결정이 채택되었다. 무역과 환경에 관한 Marrakesh 각료 결정은 국제 무역과 환경정책의 상호보완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CTE를 설치하여 이를 위한 실무작업 프로그램을 위임했다. 1994년에는 서비스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이 결정에서 GATS 제 14조의 수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결정을 위해 CTE가

---

21) 전문 마지막 절의 …having regard to non-trade concerns, including food security and the ne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의 내용이 환경문제를 포함하는 비교역적 관심사항 NTCs(non-trade concerns)에 해당된다.

22) Annex2 Domestic Support: The Basis for Exemption from the Reduction Commitments.
2. General Services
(a)research, including general research, research in connection with environmental programmes, and …

서비스무역과 환경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와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e) inspection services, including general inspection services and the inspection of particular products for health, safety, grading or standardization purposes
(g) infrastructural services, including : electricity reticulation, … and infrastructural works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programmes.
12. Payments under environmental programmes이 환경보조금 예외사항에 속한다.

결정된 실무프로그램은 전형적으로 환경보호 필요조치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라는 것을 그 목적으로 갖게 되지만 GATS 제 14조에 담고 있는 내용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명백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정책을 감안하기 위해서 14조의 수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위해 각료 결정은 필요하다면 서비스 무역과 환경간의 관계에 관해 권고를 담은 조사 및 보고를 하도록 CTE에 요청하였다. 또한 CTE가 정부간 환경 협정의 관련성과 GATS와의 관련성에 관해서도 조사하도록 요청하였다.

GATS협정의 협상기간동안 일부국가에서는 환경, 지속가능성장, 유한천연자원보존을 위해 무역을 제한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규정화되지 못하고 각료결정에 반영시킨 것이다.

8) DSU와 환경

분쟁해결 양해협정 제13조, Right to Seek Information 2에서 패널은 모든 관련 출처로부터 정보를 추구하고 당해 문제의 특정 면에 관한 견해를 청취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에 의해 제지된 과학적 혹은 기술적 문제에 관한 사실문제에 관하여 패널은 전문가 검토 그룹으로부터 서면 자문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환경문제와 같은 전문적인 문제의 합리적 판단을 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9) Doha 협상에서의 환경

Doha 각료선언(2001)[23]에서는 무역과 환경에 관해 31, 32, 33에 선언되어 있다. 31에서 무역과 환경의 상호보완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회원국은 다음 사항에 협의할 것을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23) WTO, WT/MIN(01)/DEC/1, 20. November, 2001.

(i) MEAs(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에 정한 특정 무역의무와 현존 WTO규칙 간의 관계, 다만 협상 범위는 해당의 MFA 당사자로써 WTO규칙의 적용가능의 범위에 제한되고 있다.

(ii) MEA사무국과 관련 WTO위원회 간의 정규 정보교환절차 옵저버 신분 부여기준에 관한 절차

(iii) 환경재 및 환경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소 혹은 적절한 경우의 제거에 관한 협상

32에서는 회원국은 CTE(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에 위임한 범위에 속하는 의안의 모든 항목에 관한 작업수행에서 다음 사항에 특별한 주의를 하도록 하였다고 선언한다.

(i) 시장접근에서 환경 조치의 효과 특히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최빈국의 시장접근 및 무역제한과 왜곡의 제거와 감소가 무역, 환경, 발전에 이익이 되는 상황

(ii) TRIPs의 환경관련규정

(iii) 환경 목적을 위한 표시부착요건

이들 문제에 관한 작업은 관련 WTO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의 확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부가해서 작업의 결과와 협상은 다자무역체제의 개방 및 무차별 성격과 모순이 없어야 하며 현존 WTO협정 하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위생 및 검역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있어서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다만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요구는 감안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33에서는 회원국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환경 분야의 구축 능력과 기술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환경적 검토를 수행하려는 회원국과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것이며 앞으로 이 분야 보고서가 준비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이상의 내용에서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환경문제는 묵시적 및 명시적 수용의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ATT하의 다자무역체제에서는 환경(environment)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타나내지는 않지만 20조에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GATT 출범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환경문제가 국제무역의 중요사항으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 묵시사항으로 고려한 것이지만 제한된 환경보호 정책이 가능했다. 그러나 포괄적 묵시사항으로 인해 오해나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24] 따라서 많은 국가의 다양한 입장을 포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하에서 규범의 명확화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앞으로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문제는 국제 환경협정 혹은 국내 환경보호규정과의 불일치로 갈등의 요소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들 문제해결에는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한편 앞으로 전개되는 협상포럼을 통한 규정의 명확화에 의해서 분쟁의 소지를 다소완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간의 WTO회원국의 무역과 환경문제에 대한 결론은 첫째, 무역제한 및 왜곡의 제거는 무역, 환경, 발전에 유익하다는 것[25](elimination or reduction of trade restrictions and distortions world benefit trade,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in-win-win situations)

둘째, 국제무역과 환경 정책은 상호보완적(international trade and environmental policies mutually a rapportive)이라는 것[26]

셋째, WTO는 환경보호기구가 아니며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지도 않는다는 것[27](WTO is not a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nd that it does not admire to become one.)

넷째, GATT/WTO규정은 이미 상당한 범위까지 회원국이 국가 환경보호정책을 채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28] (GATT/WTO rules Members to adopt 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다섯째, 무역자유화 환경악화의 우선적 원인이 아니며 무역수단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도 아니다 라는 것[29](Trade liberalization is not the primary cause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nor are trade instruments the first-best policy for addressing environmental problems.

여섯째, 무역정책은 그 자체로써는 경제활동에 영향을 갖는 여러 정책 결정분야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Trade policies as they are but one of several areas of policy-making that have an effect on economic activity)이다.

이상과 같은 믿음이 WTO회원국의 대체적인 합의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규정을 명확히

24) 박덕영(2004.6), "WTO무역과 환경문제와 분쟁판결에 대한 진화과정", WTO무역과 환경규범의 해석동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에 소상히 분석되어있음.

25) Paragraph 32(i) of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26) Marrakesh Ministerial Decision on Trade and Environment

27) 각주 22)와 동일

28) 각주 23)과 동일

29) Benefits of Removing Trade Restrictions and Distortions, WTO Secretariat

하려는 개정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현재 WTO다자체제에서 수용하고 있는 환경보호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논의된 범주 내에서 보면, 아마도 국가 환경보호정책은 실시되어야 할 것이고 이 범위 내에서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상충문제가 해결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범위의 축소와 확대는 분쟁해결 협정에 따른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에 따르겠지만 아마도 최근의 환경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사항도 고려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덕영(2004), "WTO 무역과 환경규범의 해석 동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Souhn Kiyon(2009), "Trade and Environment: DDA Environment Negotiations", *한국경제학회지*, 27-4.

Acemoglu, D., Aghion, P., Bursztyn, L. and Hemous, D.(2009), "The environment and directed technical chang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No. 15451.

Asche, F. and Smith, M.D.(2009), "Trade and Fisheries: Key Issues fo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Geneva, WTO Background Report for the World Trade Report* 2010.

Antweiler, W., B. Copeland, and S. Taylor(1998), *Is Free Trade Good for the Environment?*,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Broda, C., Limao, N. and Weinstein, D.(2008), "Optimal Tariffs and Market Power: The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98(5): 2032-2065.

Brou, D. and Ruta, M.(2009), " A commitment theory of subsidy agreements", *Geneva: WTO. Background Report for the World Trade Report*

Brownlie, L.(2008),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arbaugh, R.J.(2007), *International Economics*(11th edition), Mason; South-Western Carnegie Learning, Inc.

Chichilnisky(1994), "North-South Trade and the Global Environ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2, pp 855-74.

Collier,P. and Venables, A.(2008), "Trade and Economic Performance: Does Africa's Fragmentation Matter?", Oxford: University of Oxford, Open Access Publications from University of Oxford.

Copelaud, B. and Taylor(1994). "North-South Trade and the Environ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 pp. 755-87.

Davis, G.(2009), "Trade in mineral resources", *Geneva: WTO, Background paper for World Trade Report* 2010.

Ehring, L. (2007), "Freedom of transit under Article 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 sleeping beauty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Geneva: WTO, Appellate Body Secretariat Speaker Series Draft Paper presented* on 26/6/2007.

Fouquin, M., Langhammer, R. and Schweickert, R. (2006). "Natural resources abundance and its impact on regional integration. Curse or blessing?", *Annual Latin American Conference of the Euro-Latin*

Study, Issues Paper.

Grimaud, A. and Rouge, L.(2008), "Environment, directed technical change and economic policy",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41(4):439-463.

Howse, R.(2008). "The use and abuse of international law in WTO trade/environment litigation", in Janow, M. E., Donaldson, V., and Yanovich, A.(eds), *The WTO: Governance, Dispute Settlement & Developing Countries*, Huntington: Juris Publishing: 635-670.

Josling, T.(2009), "New trade issues in food,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 *Geneva: Conference Draft Presented* at the WTO TAIT conference on 10 September 2009.

Lamy, P.(2007), "The place of the WTO and its law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7(5).

Livernois, J.(2009), "On the empirical significance of the Hotelling rule", *Review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 3(1):22-41.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2009a), Environment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Developments in 2008, Paris: OECD.

OECD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Paris :OECD. - (2009b) Recent Trends of Expert Restriction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AD/TC/WP(2009)3. - (2009c)

Reducing Fishing Capacity: Best Practices for Decommissioning Schemes, Paris : OECD. - (2009d)

Environment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Developments in 2007, Paris: OECD. - (2008) Transition to Responsible Fisheries: Economic and Policy Implications, Paris:OECD. - (2000)

Ossa, R. (2009), "A new Trade Theory' of GATT/WTO negotiations", Geneva: *WTO, Staff Working Paper* N°ERSD-2009-08.

Potts, J. (2008), The Legality of PPMs under the GAT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Sustainable Trade Policy, Winnipeg: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IISD).

Valdez, S. (2007), *An Introduction to Global Financial Markets*, New York: Palgrave MacMilan.

WTO. 2001.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on 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AB-2000-11. WTO/DS/135/AB/R/. March 12, 2001.

WTO(2005), *Trade and Environment at the WTO.*

WTO(2011), World Trade Report.

WTO(2010), World Trade Report.

WTO(2009), World Trade Report.

WTO(2008), World Trade Report.

WTO(2007), World Trade Report.

ABSTRACT

Accommodation of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 Purposes on the WTO Rules

Dae-Seok Chae* · Mie-Jung Kim**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 constructive contribution to the debate on which WTO rules accommodate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al purposes. Does trade undermine the regulatory efforts of governments. However, the theoretical dimensions are partly addressed on the several key questions. For instances, is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rade and investment a threat to the environment? to control pollution and resource degradation? Will economic grow driven by trade help us to move towards a sustainable use of the world's environmental resources?

The growing world economy has been accompanied by environmental degradation including deforestation, losses in bio-diversity, global warming, air pollution, depletion of the ozone layer, overfishing and so on. The sheer number of us obviously put pressure on natural resources and ecological systems, and this pressure will counting to rise as we grow towards 10 billion in the next century. What is more, there is no indication that consumption per capita is slowing.

The perceived costs of acting alone in terms of lost investments and jobs often take the stream out of regulatory initiatives. In the worst case scenario environmental community is fearful that international trade will magnify the effects of poor environmental polices in the world. Generally, economic growth drive by trade may speed up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unless sufficient environmental safeguards are put in plac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attempts to make a constructive contribution to the study on which WTO rules accommodate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al purposes.

Key Words : Environment and Trade, WTO Trade Related Aspects of Envi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 Main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Dongguk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Dongguk University